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042호

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① 우수무역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26년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글로벌톱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② 유망전시회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③ 신규무역전시회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수도권 초보 전시회
④ 전략전시회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수도권 전시회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 단계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③ 신규무역 → ② 유망 → ① 글로벌톱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참 업체	해외 참업체	해외 바이어	비고
①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2만㎡ 이상	400 개사 이상	100 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0명 이상	○ 합동·통합 전시회 가능 - 최근 2년간 합동·통합했거나, '26년 합동·통합 예정인 전시회로 대표기관이 신청
② 유망		6천㎡ 이상	100 개사 이상	10 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
③ 신규무역		3천㎡ 이상	6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10명 이상	-
④ 전략		6천㎡ 이상	10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 전시품목이 전략산업분야인 전시회 -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필수

- 합동·통합 전시회*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합동·통합 대상 전시회 중 최소 1건의 전시회가 인증전시회여야 함
 - 동일 주최기관의 전시회간 합동·통합은 불가
 - 구성 전시회 외 합동·통합 전시회의 명칭이 별도 존재할 것
- * 동일 기간·장소에서 공동의 명칭으로 개최하는 전시회(합동) 또는 2개 이상 유사 품목 전시회를 하나로 융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통합)

** 대표기관: 합동·통합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각 주최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① 글로벌톱	~150백만원	■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6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지원 항목 내 5:5(국고:민간)
② 유망	~65백만원	■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4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③ 신규무역	~45백만원	■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④ 전략	~90백만원	■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까지 사용 ■ 해외마케팅비,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지원 항목 내 8:2(국고:민간)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②

지역특화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비수도권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참관객 유입 확대 및 소비 진작 지원으로 지역 전시회 체류 가치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6년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단, 지역신규무역전시회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글로벌전시회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② 지역유망전시회	대형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③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지역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비수도권 초보 전시회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단계 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25년 추경 선정 전시회 제외

- 성장단계 : ③ 지역신규무역 → ② 지역유망 → ① 글로벌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총 전시 면적	총 참가 업체	해외 참가 업체	해외 바이어	참관객	비고
① 글로벌	전시산업발 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단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7천㎡ 이상	100 개사 이상	25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명 이상	2,000명 이상	○ 전시품목이 전략산업분야인 전시회 -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 전시회 경쟁력, 성장가능성, 지역전략 산업 연계 등 지원 필요성 고려
② 지역 유망		4천㎡ 이상	70 개사 이상	5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③ 지역 신규무역		2천㎡ 이상	4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5명 이상	500명 이상	○ 계획 기준 평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① 글로벌	~300 백만원	■ 전략산업 연계 기획 관련 최소 20% 이상 사용 ■ 판촉지원, 소비자 체험, 관광·문화 연계, 지역 소비 창출 관련 최소 10% 이상 사용 ■ 해외마케팅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최소 30% 이상 사용	■ 지원 항목 내 5:5 (일부항목8:2)
② 지역유망	~55 백만원	■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 판촉지원, 투자 연계, 소비자 체험, 소비 창출 관련 활동비	■ 지원 항목 내 5:5 (국고:민간)
③ 지역신규무역	~40 백만원	■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1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 판촉지원, 투자 연계, 소비자 체험, 소비 창출 관련 활동비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③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인 국내 전시회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 지원대상

- '26년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 전시장을 직접 임차하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국제인증' 또는 '인증' 을 획득한 전시회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 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참관객	비고
글로벌 K브랜드	해외 전시시설	3천㎡ 이상	60 개사 이상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 최초 해외개최 전시회 지원 가능 (계획 기준 평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글로벌K브랜드	~100백만원	■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최소 50% 이상 사용 ■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 ■ 국내외 홍보비 등	■ 지원항목 내 5:5(국고:민간) 매칭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1.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심 사		선 정		확정 및 발표
주최사업자	⇒	전시산업진흥회 분과별 심사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26.1.20. ~ '26.2.3.		'26. 2.5.~6.		'26. 2월 중순		'26. 2월 중

*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 (우수무역·글K)2. 25(수), (지역특화)2. 26(목) 예정(필수 참석)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오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붙임1]~[붙임8] 참조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 분야

구분	심사 분야	심사 내용	비고
1	서류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성장도, 만족도, 가점 사항	-
2	발표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경쟁력, 성장전략, 예산계획, 주최기관 역량 등을 외부 전문가가 평가	- 글로벌톱 전략 글로벌 글로벌브랜드 발표(15"), 질의응답(10") - 유망지역유망 신규무역 지역신규무역 발표(10"), 질의응답(10")
3	산업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성 등을 산업경제분야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가 평가	- 전략전시회만 해당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0일(화) ~ 2025년 2월 3일(화), 18:00
-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 · 제출
-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김정은 과장
(T. 02-574-2021 / eun@akei.or.kr)

2.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규모

- 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단, 전시회 대형화를 위해 합동 · 통합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글로벌톱 전시회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국고보조금 사용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 으로 공지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교부

-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국고보조금 반납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전시면적 감소비율	감액율
(-5%) ~ 0%	0%
(-10%) ~ (-5.1%)	5%
(-15%) ~ (-10.1%)	10%
(-20%) ~ (-15.1%)	15%
(-25%) ~ (-20.1%)	20%
(-30%) ~ (-25.1%)	25%
(-30.1%) 이상 감소	30%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해외바이어,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
 - *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의 경우,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 참가업체수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유치목표에 미달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 유치목표 미달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유치목표 달성 여부	감액율
초과달성 및 (-5%) ~ 0%	0%
(-10%) ~ (-5.1%)	5%
(-15%) ~ (-10.1%)	10%
(-20%) ~ (-15.1%)	15%
(-25%) ~ (-20.1%)	20%
(-30%) ~ (-25.1%)	25%
(-30.1%) 이상 미달	30%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기타 사항

-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자동 평가대상이 됨
- (대상) 인증데이터 기준 참가업체 재참가율과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성장도 모두가 최근 3년 이내 성장이 정체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전시회 성장도 판단 기준>

구분	글로벌톱	유망	신규무역
참가업체 재참가율(%)	30	20	10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성장도(%)	1	3	5

※ 재참가율은 [붙임3] 계산식을 활용하여 산정, 전시회 지원 배제는 '28년 선정 공고 부터 적용 예정('25~'27 인증데이터 기준 판단)

-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회 인증(1점), 지역 소재 협력업체 참여(1점),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1점), 전시 전문 교육 수강(2점), 전시부스 권고 단가 활용(2점)

* [붙임 1] 가점 항목 참조 권고 단가의 경우 글로벌K브랜드 해당없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구 분	No.	제 출 서 류	부수 (개수)	비 고
공통서류	1	개최지원 신청서	1	[붙임 2] 작성 *지원유형 체크
	2	사업계획서	1	한글 형식으로 작성 *[붙임 4] 참고
	3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	파워포인트(발표용) 형식으로 작성
	4	'26년 개최예정인 전시회의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	임차계약서 없을 경우 전시장의 대관 예정 확인공문으로 대체
	5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증빙자료(엑셀)	1	[붙임 3]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회 국내 참가업체의 재참가율 계산
	6	서약서	1	[붙임 5] 작성
	7	사업자등록증	1	
전략전시회 추가서류	8	회사 또는 기관 소개서	1	-
	9	회사 또는 기관 경영상태확인서	1	-
합동·통합 전시회 추가서류	10	통합 개최 증빙자료	1	협약서, MOU, 공문, 별도 명칭 등 통합 개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점 관련 추가서류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1	인증서 사본(최근 3년 발행본만 인정)
	12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	인증서 사본(최근 3년 발행본만 인정)
	13	지역 소재 협력업체 참여 여부 (지역특화전시회만 해당)	1	· 장치사, 각종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지역 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사본
	14	국제전시기획사 자격증 또는 전시디자이너 자격증	1	· 임직원 2명 이상 · 신청기관의 협력사 임직원 · 자격증 사본 및 임직원확인서 제출 (자유 양식)
	15	전시 전문교육 수료증	1	· 임직원 5명 이상 또는 임직원의 10% 이상 · 3년 이내 전시전문교육(고용노동부 전시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수료증 [붙임8] 참조
	16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글로벌K브랜드전시회 제외)	1	<신청 전시회의 전화차 전시회 자료> · 기본1부스 도면 · 계약서(발주 항목 및 금액 확인용) ·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7	인증전시회 증명서 사본 및 데이터 (지역특화 신규무역전시회만 해당)	1	· 진흥회 또는 UFI 인증 증명서 사본 (최근 개최년도만 인정)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

I. 신청유형	구분:	신청유형:		
II. 전시회명	(국문)			
	(영문)			
III. 전시회 개최 개요				
전시기간	. . . ~ . . .			
전시장소				
전시면적	총 전시면적: m²(실내 m², 실외 m²)			
전시품목				
전시회 개최이력	개최횟수: 회 (최초개최: 년도, 개최주기:)			
IV. 전시회 실적 및 목표				
구 분	최근 개최실적* (년도)		2026년 개최계획	
총전시면적	총 m²(※계약서상 면적)		총 m²(※계약서상 면적)	
총부스수	총 부스 (국내: 부스/해외: 부스/기타: 부스)		총 부스 (국내: 부스/해외: 부스/기타: 부스)	
참가업체 면적	총 m²(국내: m²/해외: m²)		총 m²(국내: m²/해외: m²)	
총참가업체수	총 개국 개사 (국내: 개사/해외: 개사)		총 개국 개사 (국내: 개사/해외: 개사)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평균*	%		-	
총참관객수	총 명(국내: 명/해외: 명)		총 명(국내: 명/해외: 명)	
총바이어수	총 명(국내: 명/해외: 명)		총 명(국내: 명/해외: 명)	
컨퍼런스**	회의실수: 개실		회의실수: 개실	
	참관객수: 명(국내: 명/해외: 명)		참관객수: 명(국내: 명/해외: 명)	
	총 연사 수: 명		총 연사 수: 명	
상담실적	국내: 백만원	해외: 백만불	국내: 백만원	해외: 백만불
계약실적	국내: 백만원	해외: 백만불	국내: 백만원	해외: 백만불
가점 해당여부	☐ 일자리 창출효과 ☐ 사회적 기업 ☐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 전시전문교육 수료 ☐ 전시부스 권고단가			
V. 인증여부(해당전시회만 기술)				
인 증 기 관			인 증 년 도	※ 최근년도 기재
VI. 지원요청액				
총사업예산	백만원	국고요청액	백만원	자 부 담 액 백만원
VII. 신청기관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휴대전화	
	전 화		팩 스	
	이 메 일		주 소	
부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휴대전화	
	전 화		팩 스	
	이 메 일		주 소	

*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평균'의 경우 [붙임 3]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내 컨퍼런스 항목의 경우 '우수무역 전략전시회', '지역특화 글로벌전시회' 유형만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법인인감 또는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우수무역 전략전시회

관련 정책	산업 품목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②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합동, '26.1.)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석유화학, 철강, 수소, 모빌리티, K-컬처

○ 글로벌 전시회

관련 정책	산업 품목			
① 각 지자체 육성 산업 ②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관계부처합동, '23.2.),	강원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푸드테크, ICT	대구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ABB산업
	충북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항공정비, 모빌리티, 이차전지, ICT, 화장품·뷰티, 유기농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이차전지, 에너지
	충남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ICT,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고기능성소재,	부산	디지털테크,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테크, 미래모빌리티, 융합부품소재, 해양, 금융, 문화관광, 라이프스타일
	세종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바이오, 데이터·AI, 정보보호,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양자산업	광주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 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뿌리
	대전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양자, 반도체, 로봇, 국방,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전북	농생명바이오, 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 수소, 이차전지, 방위
	경북	푸드테크, 양자, 방산, 가상융합·AI,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 디지털부품, 라이프케어, 유전자·세포치료	전남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에너지, 미래형운송기기, 미래생명, 헬스케어, 화학·철강·조선, 신소재, 물류, 섬해양관광
	경남	방산, 첨단항공, 미래신기술, 해양플랜트·나노융합, 항노화메디컬, 에너지, 첨단정밀기계	제주	디지털기술, 미래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웰니스,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재활용

<작성양식>

(전시회명 입력) 최근 3회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작성요령 1. 전시회 최종 검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참가업체리스트를 기재 2. 참가업체 명을 동일하게 수정후 기재. 예를 들어 전전회 리스트에 ㈜진흥회, 전회 리스트에 진흥회로 기재되면 인식되지 않음 3. 사용가능한 인증데이터를 사용하면 됨. 예를 들어 2017년도 인증결과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2016년도 인증결과 활용 4. 신청기관 입력란을 제외한 부분은 시트보호 되어 있음					(인증데이터 기준)		
					전전전회-전전회 재참가율 (F)	전전회-전회 재참가율 (G)	최근 3회 국내업체 재참가율 평균
					40.0%	66.7%	53.3%
신청기관 입력란							
구분	전전전회 참가기업 (A)	전전회 참가기업 (B)	전회 참가기업 (C)	비고	자동계산		
					전전전회-전전회 비교 (D)	전전회-전회 비교 (E)	
업체수	5	6	4		2	4	
1	가	가	아		가		
2	나	나	자		나		
3	다	마	자			아	
4	라	자	라			자	
5	마	자				라	
6		라				마	

*추가 붙임파일(엑셀) 참고요망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최근 개최된 3회의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업체의 재참가율 평균을 계산

(예: 2026년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2023, 2024, 2025년 인증데이터 활용)

1) 사업 지원하는 해당년도에 인증데이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 이전 3회 전시회 인증데이터를 활용

2) 격년 개최 전시회의 경우 지난 3회 전시회 인증데이터 활용

3) 개최횟수가 2회인 전시회의 경우 지난 2회 전시회 인증데이터 활용

나. 참가업체 리스트는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

* 참가업체명과 관련 최종 인증데이터 수정, 조작 불가

2. 세부항목

가. 각 년도의 참가업체명을 동일하게 기재

1) 참가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년도 참가업체명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엑셀 상에서 계수가 가능함(작성양식의 (D), (E) 열은 제공된 엑셀파일에서 자동 표기됨)

3. 양식에 맞춰서 재참가율을 계산한 뒤 저장한 엑셀파일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우수무역전시회 사업계획서(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작성요령

주요 목 차	주요 내 용
전시회 개요,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 일반개요 및 개최 중요성 - 전시회명(국문, 영문, 약칭),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면적, 전시품목,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부대행사, 전시회 인증 여부 등 - 전시회 개최 중요성 및 목적 - 국내외 해당산업의 동향 등 ○ 전시회 개최실적 -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국내,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수(국내, 해외), 해외 바이어 유치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참가업체 재참가율, 전시회 성장도 등) ○ 지원 필요성 및 산업기여도 -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전시회 개최가 해당 산업 및 관련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기술개발 촉진, 기업매출/수출 증대, 산업규모/성장률/수출 확대 등) - 전시회와 동반 성장한 참가업체 및 바이어 성공사례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전시회를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 혜택 등 - 유사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비전
예산계획	○ 금년도 수입(국고, 지자체 지원 등 포함), 지출 계획 - 전회와 차회 비교하여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이익금 재투자 방안 ※ 기 지원 전시회의 경우 이익금 발생 여부 및 활용 계획 기술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총 직원수(전시팀 직원수), 주요사업(국내전시회 주최 또는 주관사업, 기타 해외전시회 에이전트 활동 등) -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참고사항	○ 산업발전 기여도 ○ 기타 필요사항 등
※ 작성요령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분량 : 한글파일(심사위원 참고용)은 분량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발표용)는 30페이지 이내 권장 * 전년도와 수치 외 동일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제출 불가	

* 글로벌톱 전시회는 [붙임 6]의 선정기준 중 발표심사 항목에 맞추어 단·중기 성장계획과 향후 3~5년 이후의 글로벌톱 전시회 장기 유지계획을 연도별로 추가 기술해야 함(구성방식은 자유이나 해당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우수무역전시회 사업계획서(전략전시회) 작성요령

주요목차	주요내용
전시회·컨퍼런스 개요,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 일반개요 및 개최 중요성 - 전시회명(국문, 영문, 약칭), 개최기간, 전시장소, 전시면적, 전시품목,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부대행사, 전시회 인증 여부 등 - 컨퍼런스명(국문, 영문, 약칭), 개최기간, 개최장소, 개최면적, 강연자, 행사구성,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등 - 전시회·컨퍼런스 중요성 및 목적, 국내외 해당산업의 동향 등 -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분야 신산업과의 정합성 - 지원 필요성(신산업 혁신성장,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전시회·컨퍼런스 개최실적 - (전시회)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국내,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수(국내, 해외),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전시회 성장도 등 - (컨퍼런스) 개최규모, 초청연사 수준, 참가자 수, 컨퍼런스 성장도 등
전시회·컨퍼런스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컨퍼런스 경쟁력 - 해당 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 및 한국기업의 시장성 - 전시회·컨퍼런스를 통한 신산업 육성계획 등 - 전시회·컨퍼런스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핵심가치, 혜택 등 - 유사 행사와 비교하여 해당 행사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비전
예산계획	○ 금년도 수입(국고, 지자체 지원 등 포함), 지출 계획 - 전회와 차회 비교하여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이익금 재투자 방안 ※ 기 지원 전시회의 경우 이익금 발생 여부 및 활용 계획 기술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총 직원수(전시회·컨퍼런스 업무 담당직원수), 주요사업(전시회·컨퍼런스 주최 또는 주관사업, 기타 해외행사 에이전트 활동 등) -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참고사항	○ 산업발전 기여도 및 무역거래 촉진효과 ○ 기타 필요사항 등
※ 작성요령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분량 : 한글파일(심사위원 참고용)은 분량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발표용)는 30페이지 이내 권장 * 전년도와 수치 외 동일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제출 불가	

지역특화전시회 사업계획서(글로벌전시회) 작성요령

주요목차	주요내용
전시회·컨퍼런스 개요 및 중요성	○ 일반개요 및 개최 중요성 - 전시회명(국문, 영문, 약칭), 개최기간, 전시장소, 전시면적, 전시품목,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부대행사, 전시회 인증 여부 등 - 컨퍼런스명(국문, 영문, 약칭), 개최기간, 개최장소, 개최면적, 강연자, 행사구성,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등 - 전시회·컨퍼런스 중요성 및 목적, 국내외 해당산업의 동향 등 ○ 전시회·컨퍼런스 개최실적 - (전시회)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국내,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수(국내, 해외),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전시회 성장도 등 - (컨퍼런스) 개최규모, 초청연사 수준, 참가자 수, 컨퍼런스 성장도 등
산업 기여도 및 지원 필요성	○ 산업 기여도 및 지원 필요성 -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분야 신산업과의 정합성 - 지원 필요성(신산업 혁신성장,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을 위한 연계 활동 등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컨퍼런스 경쟁력 - 해당 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 및 한국기업의 시장성 - 전시회·컨퍼런스를 통한 신산업 육성계획 등 - 전시회·컨퍼런스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핵심가치, 혜택 등 - 유사 행사와 비교하여 해당 행사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비전 - 향후 3~5년 이후 장기 유지계획(연도별 추가 기술) ○ 지자체의 전시회 육성계획 부합성 - 해당 전시회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실적 또는 계획 - 전시회 개최를 통한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예산계획	○ 금년도 수입(국고, 지자체 지원 등 포함), 지출 계획 - 전회와 차회 비교하여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전시회 지방비 투입 계획 ○ 이익금 재투자 방안 ※ 기 지원 전시회의 경우 이익금 발생 여부 및 활용 계획 기술
주최기관 역량	○ 주최기관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총 직원수(전시팀 직원수), 주요사업(국내전시회 주최 또는 주관사업, 기타 해외전시회 에이전트 활동 등) - 주최기관의 차별적 역량 등
참고사항	○ 산업발전 기여도 및 무역거래 촉진효과 ○ 기타 필요사항 등
※ 작성요령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분량 : 한글파일(심사위원 참고용)은 분량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발표용)는 30페이지 이내 권장 * 전년도와 수치 외 동일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제출 불가	

지역특화전시회 사업계획서(유망·신규무역전시회) 작성요령

주요 목 차	주요 내 용
전시회 개요,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 일반개요 및 개최 중요성 - 전시회명(국문, 영문, 약칭),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면적, 전시품목, 주최기관, 주관기관, 후원기관, 부대행사, 전시회 인증 여부 등 - 전시회 개최 중요성 및 목적 - 국내외 해당산업의 동향 등 ○ 전시회 개최실적 -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국내,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수(국내, 해외), 해외 바이어 유치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등 ○ 지원 필요성 -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전시회와 동반 성장한 참가업체 및 바이어 성공사례 -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을 위한 연계 활동 등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전시회를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 혜택 등 - 유사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비전
예산계획	○ 금년도 수입(국고, 지자체 지원 등 포함), 지출 계획 - 전회와 차회 비교하여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이익금 재투자 방안 ※ 기 지원 전시회의 경우 이익금 발생 여부 및 활용 계획 기술
주최기관 역량	○ 주최기관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총 직원수(전시팀 직원수), 주요사업(국내전시회 주최 또는 주관사업, 기타 해외전시회 에이전트 활동 등) - 주최기관의 차별적 역량 등
참고사항	○ 산업발전 기여도 ○ 기타 필요사항 등
※ 작성요령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분량 : 한글파일(심사위원 참고용)은 분량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발표용)는 30페이지 이내 권장 * 전년도와 수치 외 동일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제출 불가	

글로벌K브랜드전시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주요목차	주요내용
전시회 개요,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 일반개요 및 개최 중요성 - 전시회명(국문, 영문, 약칭),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면적, 전시품목, 주최사업자, 주관기관, 후원기관, 부대행사, 전시회 인증 여부 등 - 국내전시회 해외 현지개최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해당산업의 동향 등 - 지원 필요성(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전시회 개최실적 -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국내,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수(국내, 해외),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참가업체 재참가율, 전시회 성장도 등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국내개최 전시회의 브랜드 경쟁력 - 전시회를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핵심가치, 혜택 등.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동 전시회 참가 시 제공가능한 혜택 등 - 해외 유사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사업계획 및 성장전략 - 중장기 목표 및 비전
예산계획	○ 금년도 수입(국고, 지자체 지원 등 포함), 지출 계획 - 전회와 차회 비교하여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이익금 재투자 방안 ※ 기 지원 전시회의 경우 이익금 발생 여부 및 활용 계획 기술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총 직원수(전시팀 직원수), 주요사업(국내외 전시회 주최 또는 주관사업, 기타 해외전시회 에이전트 활동 등) - 해외 현지 네트워크 현황 -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참고사항	○ 산업발전 기여도 및 무역거래 촉진효과 ○ 기타 필요사항 등
※ 작성요령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분량 : 한글파일(심사위원 참고용)은 분량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발표용)는 30페이지 이내 권장 * 전년도와 수치 외 동일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제출 불가	

서 약 서

본 사는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사는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고, 제출한 자료 내용의 진위에 책임을 진다.
2. 본 사는 신청 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전시회 국제인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사는 국고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
4. 본 사는 국고지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반납한다.
5. 전시회 개최 불가시 보조금 전액 및 발생이자를 즉시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전시회명	국 문	
	영 문	
신청기관	회사명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글로벌톱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10점)	총전시면적	2만㎡이상(1), 3만㎡이상(2), 4만㎡이상(3), 5만㎡이상(4)
		총참가업체수	400개사이상(1), 500개사이상(2), 600개사이상(3), 700개사이상(4)
		총참관객수	3만명이상(1), 5만명이상(2)
	전시회 국제화 수준 (20점)	해외참가업체수	100개사이상(1), 120개사이상(2), 150개사이상(3), 200개사이상(4), 250개사이상(5)
		해외참관객 비율	1%이상(1), 2%이상(2), 3%이상(3), 4%이상(4), 5%이상(5)
		해외바이어수	1천명이상(2), 1.5천명이상(4), 2천명이상(6), 2.5천명이상(8), 3천명이상(10)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중요성, 지원 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실적, 수출마케팅 실적, 산업 발전 기여도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유사 국내외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 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지속가능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유망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10점)	총전시면적	6천㎡이상(1), 8천㎡이상(2), 1만㎡이상(3), 2만㎡이상(4),	4
		총참가업체수	100개사이상(1), 120개사이상(2), 150개사이상(3), 200 개사이상(4)	4
		총참관객수	1만명이상(1), 3만명이상(2)	2
	전시회 국제화 수준 (20점)	해외참가업체수	10개사이상(2), 15개사이상(4), 30개사이상(6), 50개사이상(8), 80개사이상(10)	10
		해외바이어수	50명이상(2), 100명이상(4), 300명이상(6), 500명이상(8), 700명이상(10)	10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중요성, 지원 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실적, 수출마케팅 실적, 산업 발전 기여도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유사 국내외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 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신규무역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10점)	총전시면적	3천㎡이상(1), 5천㎡이상(2), 8천㎡이상(3), 1만㎡이상(4)	4
		총참가업체수	60개사이상(1), 100개사이상(2), 120개사이상(3), 150개사이상(4)	4
		총참관객수	4천명이상(1), 1만명이상(2)	2
	전시회 국제화 수준 (20점)	해외참가업체수	5개사이상(2), 10개사이상(3), 20개사이상(4), 40개사이상(5)	5
		해외바이어수	10명이상(3), 30명이상(5), 50명이상(7), 100명이상(10), 150명이상(15)	15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중요성, 지원 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산업기여도 - 전시회 실적, 수출마케팅 실적, 산업 발전 기여도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유사 국내외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전략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30점)	전시회 규모 (10점)	총전시면적	6천㎡이상(1), 8천㎡이상(2), 1만㎡이상(3), 2만㎡이상(4)	4
		총참가업체수	100개사이상(1), 120개사이상(2), 150개사이상(3), 200 개사이상(4)	4
		총참관객수	1만명이상(1), 3만명이상(2)	2
	전시회 국제화 수준 (10점)	해외참가업체수	10개사이상(1), 15개사이상(2), 30개사이상(3), 50개사이상(4), 80개사이상(5)	5
		해외바이어수	50명이상(1), 100명이상(2), 300명이상(3), 500명이상(4), 700명이상(5)	5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 전시회·컨퍼런스 중요성, 지원 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행사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컨퍼런스 실적 및 성장도 - 행사 규모, 국제화 수준, 수출마케팅 실적 및 성장도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컨퍼런스 경쟁력 - 유사 국내외 행사와 비교하여 해당 행사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사업자 역량	○ 전시회 분야 주최사업자 조직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 컨퍼런스 분야 주최사업자 조직 및 전문성 - 컨퍼런스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사업자의 차별적 역량 등		10
산업 심사 (10점)	시장성	시장규모, 대표기업 매출액 등		5
	성장성	해당산업에 대한 국내 및 해외기관의 평가 등		5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글로벌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20점)	총전시면적	7천㎡이상(1), 1만㎡이상(2), 1.5만㎡이상(3), 2만㎡이상(4), 3만㎡이상(5)	5
		총참가업체수	100개사이상(1), 150개사이상(2), 200개사이상(3), 300개사이상(4), 500개사이상(5)	5
		총참관객수	2천명이상(2), 5천명이상(4), 8천명이상(6), 1만명이상(8), 3만명이상(10)	10
	전시회 국제화 수준 (10점)	해외참가업체수	25개사이상(1), 50개사이상(2), 70개사이상(3), 100개사이상(4), 120개사이상(5)	5
		해외바이어수	100명이상(1), 200명이상(2), 300명이상(3), 500명이상(4), 700명이상(5)	5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지역소재 협력업체	지역소재 협력업체 증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시부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 전시회·컨퍼런스 중요성, 지원 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행사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컨퍼런스 실적 및 성장도 - 행사 규모, 국제화 수준, 수출마케팅 실적 및 성장도 등		10
	산업 기여도 및 지원 필요성	○ 산업 기여도 및 지원 필요성 - 지자체 전략산업 연계,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를 위한 전략 등		15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컨퍼런스 경쟁력 - 유사 국내외 행사와 비교하여 해당 행사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 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지속가능성 등		15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기관 역량	○ 주최기관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기관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지역유망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20점)	총전시면적	4천㎡이상(1), 5천㎡이상(2), 7천㎡이상(3), 1만㎡이상(4), 1.3만㎡이상(5)	5
		총참가업체수	70개사이상(1), 100개사이상(2), 150개사이상(3), 200개사이상(4), 250개사이상(5)	5
		총참관객수	1천명이상(2), 5천명이상(4), 8천명이상(6), 1만명이상(8), 2만명이상(10)	10
	전시회 국제화 수준 (10점)	해외참가업체수	5개사이상(1), 10개사이상(2), 15개사이상(3), 30개사이상(4), 50개사이상(5)	5
		해외바이어수	50명이상(1), 70명이상(2), 100명이상(3), 200명이상(4), 300명이상(5)	5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지역소재 협력업체	지역소재 협력업체 증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시부스 권고사항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 전시회 중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성장도 -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수출마케팅 실적 및 성장도 등 ○ 지원 필요성 -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을 위한 연계 활동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유사 국내외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기관 역량	○ 주최기관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기관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20점)	총전시면적	2천㎡이상(1), 3천㎡이상(2), 4천㎡이상(3), 5천㎡이상(4), 6천㎡이상(5)	5
		총참가업체수	40개사이상(1), 50개사이상(2), 80개사이상(3), 100개사이상(4), 150개사이상(5)	5
		총참관객수	5백명이상(2), 1천명이상(4), 3천명이상(6), 5천명이상(8), 8천명이상(10)	10
	전시회 국제화 수준 (10점)	해외참가업체수	5개사이상(1), 10개사이상(2), 15개사이상(3), 20개사이상(4), 30개사이상(5)	5
		해외바이어수	5명이상(1), 10명이상(2), 20명이상(3), 40명이상(4), 60명이상(5)	5
	전시회 성장도 (5점)	전시회 규모	1%이상(0.5), 3%이상(1), 7%이상(1.5), 10%이상(2)	2
		국제화 수준	1%이상(1), 5%이상(2), 10%이상(3)	3
	고객만족도 (5점)	국내업체 재참가율	20%미만(1), 20%이상(1.5), 30%이상(2), 40%이상(2.5), 50%이상(3)	3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2점미만(0.5), 2점이상(1), 3점이상(1.5), 4점이상(2) *5점 만점	2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전시회 인증	전시산업진흥회 또는 UFI(국제)인증전시회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지역소재 협력업체	지역소재 협력업체 증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전세버스 권고단가 활용	권고단가 활용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 전시회 중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성장도 -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수출마케팅 실적 및 성장도 등 ○ 지원 필요성 - 국내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을 위한 연계 활동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유사 국내외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전시회가 갖는 명백하고 차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기관 역량	○ 주최기관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주최기관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동일 유형의 신청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글로벌K브랜드전시회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 심사 (40점)	전시회 규모 (30점)	총전시면적	3천㎡이상(2), 4천㎡이상(4), 5천㎡이상(6), 7천㎡이상(8), 9천㎡이상(10)	10
		총참가업체수	60개사이상(2), 100개사이상(4), 150개사이상(6), 200개사이상(8), 250개사이상(10)	10
		총참관객수	3천명이상(2), 6천명이상(4), 1만명이상(6), 2만명이상(8), 3만명이상(10)	10
	고객만족도 (10점)	참가업체 재참가 의향	○ 전시산업진흥회 조사결과 1점미만(1), 1점이상(2), 2점이상(3), 3점이상(4), 4점이상(5) *5점 만점	5
		전시회 전반적 만족도	○ 전시산업진흥회 조사결과 1점미만(1), 1점이상(2), 2점이상(3), 3점이상(4), 4점이상(5) *5점 만점	5
	가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1
		전시산업 전문자격증	국제전시기획사(2인 이상) 또는 주최사업자 협력사 선정기업이 전시디자이너(2인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
		전시전문교육 수료	전시전문교육 수료 인증	2
발표 심사 (60점)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 전시회 중요성, 지원필요성 - 국내외 해당산업 동향, 해외 현지 전시회 개최중요성 등 ○ 전시회 실적 및 성장도 -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수출마케팅 실적 및 성장도 등		20
	전시회 경쟁력 및 성장전략	○ 전시회 경쟁력 - 국내개최 전시회의 브랜드 경쟁력, 해외 유사전시회와의 차별화된 특성 등 ○ 금년도 사업계획 - 국내외 홍보계획, 수출마케팅 지원계획 등 ○ 중장기 성장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20
	예산계획 타당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 항목별 사용계획, 이익금 재투자 방안 등		10
	주최사업자 역량	○ 주최사업자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전시회 성장에 적합한 조직구성, 해외 현지 네트워크, 주최사업 자의 차별적 역량 등		10

* 최초개최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 규모는 총 전시면적만을 기준으로 심사

**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전시회 규모'는 계획 기준으로 적용하고, '고객만족도'는 동일 유형의 신청
전시회 평균값을 적용함

*** 총점 5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가능함

우수무역전시회(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세부 지원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글로벌톱 (국제화)	유망 (전문화)	신규무역 (대형화)
해외 마케팅비 (해외바이어업체 유치 해외홍보 등)	■ 해외 바이어의 항공비, 숙박비, 유치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바이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해외 바이어 리셉션 개최비 ■ 해외 바이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 항공비 숙박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업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 등 리셉션 개최비 ■ 해외업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 해외매체 광고비 - 해외방송, 신문, 잡지, 해외전시회 디렉토리, 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제작비 등(국내 발행 영자신문, 잡지) ■ 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 및 송출비,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국문·외국어 혼용 가능) ※ 발송비의 경우 발송목적, 수령자, 발송국가,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일식비 등 출장비는 제외) ■ 전시회 해외설명회 개최비 - 회의실 임차비, 리셉션비, 통역비 등 ■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시스템 설계비, 화상상담 및 바이어매칭 기능 구현비, 참가 업체 콘텐츠 제작비 등	총 지원금의 최소 60%이상 사용	총 지원금의 최소 40%이상 사용	총 지원금의 최소 20%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전시회관련 부대행사 개최비(비대면 포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수출상담회 등(회의실 임차료, 자료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화상상담 플랫폼 이용료, 화상상담 장비임차비 등) - 라이브 커머스 운영비 등(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현장 촬영비, 쇼호스트 섭외비 등)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장치비 - 바이어라운지, 비즈니스센터, 프레스센터, 인터넷라운지 등	사용가능		
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 국내중소기업 부스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최대 2부스) 정상가의 최대 30% 內	지원불가		사용 가능
국내 홍보비	■ 국내매체 광고비 - 국내방송, 신문, 잡지, 국내사이트 배너 광고 및 제작비 등 ■ 국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전시회 홍보관련 자료(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영상 등) 제작 및 발송비 등	지원불가		사용 가능
관리인건비 등	전문직, 단기인력 등 직접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불가		
인증비	전시회 인증비			
비 고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지원 항목 내에서 5:5 이상으로 매칭 ■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집행(경영사업자 제외)			

우수무역전시회(전략전시회) 세부 지원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지원내용
전시장 임차비	■ 전시장 임차비 - 전시장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경비	총 지원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 국내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부스 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최대 2부스) 정상가의 최대 50% 內 ■ 국내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시품 왕복 운송비 및 통역비	사용가능
국내외 홍보비	■ 국내·외 매체 광고비 - 국내·외 방송, 신문, 잡지, 국내·외 전시회 디렉토리, 국내·외 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제작비 등(국내 발행 영자신문, 잡지 등도 인정) ■ 국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 및 송출비,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 ※ 발송비의 경우 발송목적, 수령자, 발송국가,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출장비 제외) ■ 전시회 해외설명회 개최비 - 회의실 임차비, 리셉션비, 통역비 등 ■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시스템 설계비, 화상상담 및 바이어매칭 기능 구현비, 참가업체 콘텐츠 제작비 등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해외연사, 해외바이어,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의 항공비, 숙박비, 해외업체 유치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업체· 해외바이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해외바이어,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 등 리셉션 개최비 ■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수출상담회 장소임차료(전시홀 외) ■ 전시회 관련 부대행사 개최비(대면·비대면 방식 포함) - 수출상담회 등(회의실 임차료, 자료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화상상담 플랫폼 이용료, 화상상담 장비임차비 등) - 라이브 커머스 운영비 등(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현장 촬영비, 쇼호스트 섭외비 등)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장치비 - 바이어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프레스 센터, 인터넷 라운지 등	사용가능
컨퍼런스 개최비 등	■ 컨퍼런스 개최비(대면·비대면 방식 포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회의실 임차료, 자료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등	지원불가
관리인건비등	전문직, 단기인력 등 직접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인증비	전시회 인증비	
비 고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지원 항목 내에서 8:2 이상으로 매칭 ■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집행(경영사업자 제외)	

지역특화전시회(글로벌전시회) 세부 지원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지원내용	매칭
전략산업 연계 기획	■ 전략산업 연계 주요 테마 기획 - 관련 부대행사 기획·운영비, 제작비 등 ■ 산업전 특화 품목 구성 관련 컨설팅비 등	총 지원금의 최소20% 이상 사용	8:2매칭
지역 소비 창출비 등	■ 산업시찰, 전시 참가자 대상 관광 투어 ■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공연, 페스티벌 등 로컬 브랜드 확산 연계 운영 ■ 전시회 소비 진작 지원 - 라이브커머스, MD상담회, 판로개척프로그램, 참관객 쿠폰, 시연시음 등	총 지원금의 최소10% 이상 사용	8:2매칭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업체 유치, 해외 홍보 등)	■ 해외 바이어, 외신기자, 해외초청인사의 항공비, 숙박비, 유치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 (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바이어, 해외업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해외 바이어, 외신기자, 해외 초청인사 등 리셉션 개최비 ■ 해외 바이어, 해외업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 해외매체 광고비 - 해외방송, 신문, 잡지, 해외전시회 디렉토리, 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 제작비 등(국내 발행 영자신문, 잡지 등) ■ 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 및 송출비,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국문·외국어 혼용일 경우에도 인정) ※ 발송비의 경우 발송목적 수령자 발송국가 내용물 등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일식비 등 출장비 제외) ■ 전시회 해외설명회 개최비 - 회의실 임차비, 리셉션비, 통역비 등 ■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시스템 설계비, 화상상담 및 바이어매칭 기능 구현비, 참가업체 콘텐츠 제작비 등	총 지원금의 최소 30%이상 사용	5:5매칭
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 국내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부스 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최대 2부스) 정상가의 최대 50% 內 ■ 국내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시품 왕복 운송비 및 통역비	사용가능	5:5매칭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수출상담회 장소임차료(전시홀 외) ■ 전시회 관련 부대행사 개최비(대면·비대면 방식 포함) - 수출상담회 등(회의실 임차료, 자료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화상상담 플랫폼 이용료, 화상상담 장비임차비 등) -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콘텐츠 기획·운영, 현장 촬영비, 쇼호스트 섭외비 등)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장치비 - 바이어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프레스 센터, 인터넷 라운지 등	사용가능	5:5매칭
컨퍼런스 개최비 등	■ 컨퍼런스 개최비(대면·비대면 방식 포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회의실 임차료, 자료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등	사용가능	5:5매칭
국내 홍보비	■ 국내매체 광고비 - 국내방송, 신문, 잡지, 국내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제작비 등 ■ 국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전시회 홍보관련 자료(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영상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	사용가능	5:5매칭
관리인건비 등	전문직, 단기인력 등 직접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불가	
인증비	전시회 인증비		
비 고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지원항목에 따라 5:5, 8:2 이상으로 매칭 ■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집행(겸영사업자 제외)		

지역특화전시회(유망·신규무역 전시회) 세부 지원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유망 (전문화)	신규무역 (대형화)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업체 유치, 해외 홍보 등)	■ 해외 바이어의 항공비, 숙박비, 유치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바이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해외 바이어 리셉션 개최비 ■ 해외 바이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 외신기자 및 해외초청인사 항공비, 숙박비, 해외업체 유치비 등 - 항공비, 숙박비 외에 공증비용 등 인정(단, 기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업체 유치 시 유치수수료만 인정) ■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 등 리셉션 개최비 ■ 해외업체 지원 통역비(영어 포함) ■ 해외매체 광고비 - 해외방송, 신문, 잡지, 해외전시회 디렉토리, 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제작비 등(국내 발행 영자신문 잡지 등) ■ 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 및 송출비,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국문·외국어 혼용일 경우에도 인정) ※ 발송비의 경우 발송목적, 수령자, 발송국가,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일식비 등 출장비 제외) ■ 전시회 해외설명회 개최비 - 회의실 임차비, 리셉션비, 통역비 등 ■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시스템 설계비, 화상상담 및 바이어매칭 기능 구현비, 참가업체 콘텐츠 제작비 등	총 지원금의 최소 20%이상 사용	총 지원금의 최소 10%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 전시회관련 부대행사 개최비(대면·비대면 포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수출상담회 등(회의실 임차료, 자료 제작비, 통역부스 사용료, 화상상담 플랫폼 이용료, 화상상담 장비임차비 등) - 라이브 커머스 운영비 등(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현장 촬영비, 쇼호스트 섭외비 등)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장치비 - 바이어라운지, 비즈니스센터, 프레젠테이션, 인터넷라운지 등	사용가능	
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 국내중소기업 부스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최대 2부스) 정상가의 최대 30% 內	사용가능	
국내 홍보비	■ 국내매체 광고비 - 국내방송, 신문, 잡지, 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제작비 등 ■ 국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전시회 홍보관련 자료(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영상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	사용가능	
지역 소비 창출비	■ 관광 프로그램, 공연, 지역상권 연계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 소비 진작 지원비 - 라이브커머스, MD상담회, 판로개척프로그램, 참관객 쿠폰, 시연시음 등	사용가능	
관리인건비등	전문직, 단기인력 등 직접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불가	
인증비	전시회 인증비		
비 고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지원항목 내 5:5 이상으로 매칭 ■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집행(겸영사업자 제외)		

글로벌K브랜드전람회 세부 지원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지원내용
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 국내중소기업 부스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최대 4부스) 정상가의 최대 50% 內 ■ 국내업체 지원 통역비 ■ 국내업체 전시품 왕복 운송비 ■ 국내중소기업 비대면 부스 현장운영비 - 현장운영 대행비, 화상상담 플랫폼 이용료, 화상상담 장비임차비 등	총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사용
전시장 임차비	■ 전시장(회의실 제외) 임차비 - 임차비만 인정되며 관리비 등 제경비는 인정 불가	총 지원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국내·외 홍보비	■ 해외 매체 광고비 - 해외방송, 신문, 잡지, 해외전람회 디렉토리, 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및 광고 제작비 등(국내 발행 영자신문, 잡지 등도 인정) ■ 국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 및 송출비,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의 제작 및 발송비 등 ※ 발송비의 경우 발송목적, 수령자, 발송국가,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외바이어, 외신기자 및 해외 초청인사 등 리셉션 개최비 - 회의실 임차비, 리셉션비 등 ■ 라이브 커머스 운영비 - 해외 현지 라이브 커머스 채널 활용 시 사용 가능 - 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현장 촬영비, 쇼호스트 섭외비 등 ■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시스템 설계비, 화상상담 및 바이어매칭 기능 구현비, 참가업체 콘텐츠 제작비 등	사용 가능
관리, 인건비 등	전문직, 단기인력 등 직접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불가
인증비	전시회 인증비	
비 고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지원 항목 내에서 5:5 이상으로 매칭 ■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집행(겸영사업자 제외)	

붙임 8

가점항목-전시 전문 교육과정(예시)

No.	과목명	교육 기관
1	전시 참가 마케팅 과정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전시사업자 과정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바이어가 바잉(buying)하는 해외 전시 마케팅 전략	한국생산성본부
4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전시마케팅 전략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아카데미
5	바이어를 사로잡는 전시마케팅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아카데미

※ 상기 목록은 수강 가능 교육 예시이며, 이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진흥회의 검토를 거쳐 인정 예정